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3. 2. 2.  
복지문화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황국주 의원 등 10명(황국주, 권숙자, 고명옥, 도하석, 김장관, 김기열, 정순옥, 임미연, 이영빈, 이선주)
- 발의일자: 2023. 1. 20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. 20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3. 2. 2.)

### 2. 개정이유

- 구청장이 지역축제 운영함에 안전 확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, 지역축제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전대책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서 안전한 지역축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이 지역축제 운영에 있어 안전 확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
- 나.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에 구청장에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대책을 확인하도록 함(안 제4조제2항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11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3조의9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- 입법예고(2023. 1. 20. ~ 2023. 1. 30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를 계획·운영함에 있어 구청장이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지방자치가 확립되면서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축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마다 관광자원 확보와 지역성 확립을 위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2023년 대구시에 예정되어 있는 지역축제는 약 52개이며, 2022년 달서구가 개최한 지역축제는 ‘장미꽃 필 무렵’을 포함해 10개에 달하고 있음.
- 현재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「재난안전법」 제66조의11제1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거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의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,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
-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는 판례<sup>1)</sup>와 축제 진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한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
- 지역축제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안에 구청장이 지역축제에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, 민간위탁 시에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
- 지역축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, 지역축제 활성화에 따른 정책적 필요성 또한 충분하며,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개정한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---

1)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입점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(대법원 2010, 7. 8. 선고 2010다13732판결).